

윤리규정

제정 2022. 7. 29.
(국토부장관 승인)

전 문

건축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에 필요한 공간과 환경을 창조하는 행위이다. 건축사는 국가 자격과 면허를 통해 건축행위에 관한 고유의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설계, 감리한 건축물, 공공공간 및 공간환경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건축사는 자신의 건축행위가 사용자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안전, 건강, 복지에 기여하고 시대와 지역 문화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건축사 윤리규정’은 이와 같은 건축사의 책무를 이행하고 바람직한 직업 행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담는다.

‘건축사 윤리규정’은 윤리강령과 윤리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윤리규정 위반시의 조치와 절차를 정한다.

윤리강령

1. 건축사는 우리 사회 건축 분야의 으뜸 전문 직능인으로서 ‘건축사 윤리규정(윤리강령,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을 명예롭게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한다.
2. 건축사는 건축 전문인으로서의 품위와 청렴성을 지키고, 이해 충돌과 불법, 부당한 행위를 회피하며, 공정한 입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축사는 인권의 보호, 국민의 건강·안전·복지 및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을 해야 하며, 문화유산 및 환경을 보존하는 건축, 품격과 심미적 가치를 지닌 건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오로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임하고, 계약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의뢰인과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5. 건축사는 계속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고도로 유지하고, 위법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심의, 심사, 공모 등에서도 건축전문가로서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건축사는 동료 건축사의 명예와 열의, 수입 업무와 지적재산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한 업무 질서와 근무 환경의 개선을 통해 건축 전문직의 공동발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쓴다.

윤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대상 및 규정 준수) 건축사는 업무 형태나 지역, 직위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 활동에 있어서 본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조(선의의 고발) 건축사가 본 윤리규정의 하나 이상의 조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할만한 정보를 가진 경우, 혹은 건축사의 정직성, 신뢰성, 적합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건축사, 협회 또는 의뢰인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조(위반시 조치)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경고, 회원 권리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위반에 대한 의결은 협회 내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심각한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어 자격사항 등의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축사법 제30조의4에서 정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의 절차는 윤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강요 금지) 건축사는 동료 건축사에게 강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가. 협회 이외의 다른 단체나 조직의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
 - 나. 정관에서 정한 입회비 외에 별도의 가입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다. 건축사 업무에 있어 다른 지역 건축사를 차별하는 행위
2. 건축사는 제1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다른 건축사에게 업무 상 차별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정 절차) 본 윤리규정은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6조(품위와 청렴) 건축사는 제반 건축관련 업무에 있어 품위와 청렴을 유지하고, 동료 및 직원들도 이를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건축사는 설계 및 감리, 자문, 심사, 설계공모 등의 건축 업무를 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건축사는 제반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 성실, 정직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직원 등의 관계자들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의 방지 및 진실성) 건축사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 및 건축 관련 의견 요청에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건축사는 중요한 사실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다른 건축사 및 그의 작업에 대한 평가를 요청 받은 경우 건축사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들을 파악하고 편협함 없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
3. 자문, 심사 등의 업무에 있어 임의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결정, 의견 또는 판단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4. 건축사는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심사, 자문 등에 관여하는 상황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5.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고, 본인 회사의 역량이나 작업품질,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6. 건축사의 활동들은 진행 중인 업무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만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8조(부당행위 거부) 건축사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1. 건축사는 의뢰인, 시공 및 감리자 등의 관계자, 민원인등으로부터 불법,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 의뢰인 및 관계자의 결정이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공공의 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건축사는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의뢰인에게 고지, 조언, 권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

제9조(허위홍보 금지) 건축사는 자신 및 사무소의 직무, 능력, 경력, 자격을 의도적으로 허위 혹은 과장하여 홍보, 선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사는 과장된 전망 또는 결과 예측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지 아니한다.

2. 건축사는 업무 수입을 위해 정부 및 허가관청 등에 영향력이 있음을 암시하거나 법률, 본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금품 및 이권 수수 금지) 건축사는 심의, 자문, 업무대행 등 건축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이나 물품, 이권을 요구하거나 수수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사는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선물을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2. 각종 위원 등 공적 자격으로 업무에 임하는 건축사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금전 또는 선물의 증여를 요구, 수수하지 아니한다.
3. 건축사는 건설과 관련하여 제품을 지정하거나 보증한 자재 또는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공에 대한 윤리

제11조(공동선의 추구) 건축사는 공공과 사회의 이익을 존중하고 자신의 업무가 사회,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깊이 고려하며, 자신의 건축물 및 건조 환경을 사용하게 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인권, 건강, 안전, 복지의 추구) 건축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개인과 대중의 건강, 안전 및 복지가 보장되도록 관련 업무에 임해야 한다.

1. 건축사는 공간을 설계할 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합법적인 경우에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공간 구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2. 건축사는 인종, 종교, 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축사는 사용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여 건축물과 건조 환경을 설계한다.

제13조(공익활동 참여) 건축사는 전문인이자 시민으로서 공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건축과 건축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건축 품질 및 품격향상) 건축사는 건축물과 건조 환경의 품질 및 품격 향상을 통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건축 및 문화유산 보존) 건축사는 자신이 창작한 건축물이 위치하는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 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며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제16조(환경에 대한 고려) 건축사는 환경을 존중하는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과 건축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축사는 깨끗한 공기, 물, 햇빛, 에너지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의 생산, 추출, 운송 및 소비와 천연자원의 복원을 위한 건축이 되도록 노력한다.
2. 건축사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물 사용을 줄이고 급수, 수질, 유역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한다.
3. 건축사는 폐기물 및 오염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내 독소와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건축자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4. 건축사는 사업 대상지의 개발이 자연 서식지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7조(업무수행 태도) 건축사는 성실하고 양심적인 자세와 전문가다운 방식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 및 사용자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평무사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는 공정하고 성실한 독립적 주체로서 업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윤리규정에 반하는 모든 상황과 행동을 회피해야 한다.
2. 건축사는 건축사로서의 업무 실적, 업무 범위 및 업무 능력 등을 나타내는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 되도록 노력하며, 의뢰인에게 업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한다.
3. 건축사는 수행하는 업무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의뢰인과 합의된 일정 및 비용의 한도 내에서 과도한 지연없이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4. 건축사는 업무 수행의 결과가 안전하고 사용 및 유지관리 비용이 효율적이며, 건축물의 예상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5. 건축사는 사적인 이익이 의뢰인의 이익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하며, 사적인 이익으로 인해 의뢰인을 위한 업무에 대한 판단의 정당성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제18조(계약서 작성) 건축사는 계약 상대방과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주의와 성실을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축사의 모든 직업적 계약은 본 윤리규정의 조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어긋나는 계약은 수입하지 않으며, 계약서 체결 전에 계약서의 조항들이 본인의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선택이나 결정을 강제할 위험이 있는지 검토한다.
2. 건축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업의 범위나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며, 계약 서류의 해석 및 계약 수행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3. 건축사는 업무대가 제안에 앞서 과업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업무대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가에 한하며,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재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업무 협력) 건축사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 시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명확한 업무 조건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사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할 시 적당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적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축사는 외부 전문가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분담과 책임, 보수를 명확히 합의한 후 신뢰를 갖고 개방적이고 정직한 방식으로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3. 건축사는 업무에 참여한 타 전문가의 정당한 업무 참여 공표를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공표 시 상호간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시한다.
4. 건축사는 계약 시 의뢰인과 사전에 합의하였거나 사후에 의뢰인으로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동의, 하도계약에 명시된 지불조건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하청으로 줄 수 없다.

제20조(진행사항 고지) 건축사는 업무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의뢰인에게 적절히 알려야 하며, 업무 관련 당사자들 간 이해 충돌을 인지할 때는 이를 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1. 의뢰인의 판단이 다른 사업이나 사람, 혹은 건축사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축사는 의견을 전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동의를 이루어진 후 관련 업무를 진행 한다.
2.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상충의 갈등으로 인해,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건축사는 다른 방법으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적 서비스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된 자세로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내린 주요 결정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4. 사업의 일정, 품질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혹은 예정되지 않았거나 의뢰인

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건축사는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5. 건축사는 사업에 관한 진행상황 및 의사소통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가능한 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업무의 진행상황을 고지해야 한다.

제21조(기밀유지) 건축사는 의뢰인과의 업무상 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사전 동의나 합법적인 권한에 의하지 않고는 의뢰인의 기밀정보를 공표할 수 없다.

1. 건축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및 공개할 수 있다.
 - 가. 해당 정보가 명시적으로 건축사가 수행할 업무를 위한 경우
 - 나.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개인 또는 회사가 명확히 허용한 경우
 - 다. 불법 행위 또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라. 법률, 관할 법원, 정부 또는 관련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건축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정보를 사용하거나 및 공개할 수 있다.
 - 가. 정보와 관련된 개인 또는 회사의 계약적 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경우, 그 영역과 범위 이내에서
 - 나. 해당 건축사의 법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보존하거나 행사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영역과 범위 이내에서

제22조(기록 유지 및 보관)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는 업무와 관련된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1. 관련된 기록, 정보 및 개인 데이터는 안전하고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현행법에 맞게 유지, 접근, 보관되어야 한다.
2. 직원이나 파트너가 수행한 작업과 관련하여 기밀이 아니거나 상업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디자인, 도면, 데이터, 보고서, 메모 또는 기타 자료의 사본을 퇴사하는 당사자가 요구하였을 경우, 건축사는 이를 부당하게 보유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를 떠나는 건축사는 자신의 고용주나 파트너의 허가를 득한 이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설계 도면, 데이터, 보고서, 노트 또는 기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제5장 직무에 대한 윤리

제23조(법규 준수) 건축사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성 유지) 건축사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지속개발과 수련, 경험

축적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1. 건축사는 건축 전문인으로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수련을 통해 자신은 물론 건축계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건축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지식과 실무수행 숙련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제25조(계속교육) 건축사는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축사등록원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자격대여 금지) 건축사는 건축사 자격대여 및 이와 유사한 종류의 불법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건축사법 제10조 및 제 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직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20인 미만의 사무소에서 건축사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건축사는 본인의 책임 있는 통제를 받지 않은 도면, 규격,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전문적인 작업에 대해서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아니 된다.
4.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서명을 할 수 없으며, 서명을 빌미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지적재산 보호) 건축사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허락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표절을 해서는 아니 되며, 협력 설계 등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작업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건축사의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거한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훼손 및 표절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2.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고용된 등록 건축사는 회사에서 수행한 경력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증빙서를 취득한 후 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증빙서에는 해당 건축사가 협력한 임무 중 그가 수행한 역할을 명시하도록 한다.
3. 공개된 건축적 아이디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 건축사가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관리감독 책임)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의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업무를 위한 체계적인 수행체계를 갖추어 협력회사 및 협력자, 직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제29조(설계공모) 공공 또는 민간의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1. 건축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되는 설계공모에만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중에 불공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참여를 철회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불공정한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 가. 설계용역비 혹은 공사비 과소 : 공공건축물 설계용역비 혹은 공사비 대비 지나치게 낮은 경우
 - 나. 불공정 진행 및 심사 가능성 : 공모 내용, 절차 및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히 손상된 경우
2. 건축사는 본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설계공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공공과 동일하게 민간의 설계공모에 있어서도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이해관계에 따른 회피 신청 등의 규정과 절차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행해야 한다.
4. 기획업무, 자문, 심사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련된 기밀을 엄수하며, 관련하여 금품 수수나, 이권 개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6장 건축사 상호간의 윤리

제30조(상호존중) 건축사는 동료 건축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건축적 열의와 공헌을 인정하며, 건축 전문직능의 공동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

1. 건축사들은 서로 간 동료로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돕고 존중하여야 한다.
2. 건축사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바탕으로 직업적 명성을 쌓아야 하며, 오직 직업적 역량과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의 품질로써 다른 건축사와 경쟁해야 한다.

제31조(업무질서 유지)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업의 수입을 시도하거나 과정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1. 기존 건축사를 대체하여 계약을 요청 받은 건축사는 수입 전에 해당 건축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노력을 하고, 전임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을 완료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2. 같은 과업의 같은 서비스를 위해 이미 다른 건축사가 산정한 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제시하지 않으며, 과업을 수입하기 위해 할인이나 용역, 선물 등을 제공하지 아니 한다.

제32조(업무환경 개선) 건축사는 동료와 직원, 협력자들에게 적절한 업무 환경과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력 및 전문성 개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건축사는 직원에게 공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건축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근무시간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삶이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건축사는 건축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를 이해하고, 전문적인 교육 후 인턴쉽 등을 통해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

제33조(공익신고) 건축사는 사무소 구성원의 정당한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내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 건축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취해야 한다.
2. 위험한 상황과 의심되는 불법행위를 인지한 건축사 및 사무소 구성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이나 조직에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